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의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시설로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로당 시설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간 연계성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鮮于 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문제제기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으로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지역 사회(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단순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현재 경로당이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바로 경로당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비록 시설규모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행정단위로 볼 때 말단 하부조직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현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식을 약간 달리하면,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한 휴식공간의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경로당은 처음부터 시설운영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량으로 설치하는 데에 그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로당에 상근자가 없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지역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동일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면서 최근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시설로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위치로 볼 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 모두 노인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역노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경로당 시설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간 연계성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경로당의 설치 현황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의 설립목적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① 친목도모, ② 취미활동, ③ 공동작업장 운영 및 ④ 각종 정보교환, ⑤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여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결국 경로당과 여타 시설간 상호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의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에 대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법인이나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

트를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경로당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택개발과 관련된 법시행령 때문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8년 말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수는 약 3만 5천여 개소이고, 회원으로 등록된 노인수는 약 166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시설 1개소당 약 47명 정도의 노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등록 노인의 약 49% 수준인 82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경로당의 시설수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대규모적인 주택개발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계층의 증가로 나타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노인단체의 조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산업화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경로당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조직·운영체계의 활성화 미흡

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이다. 대한노인회의 전국 조직체계를 보면, 서울에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연합회,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에 지회, 그리고 읍·면·동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회에서 경로당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한노인회의 조직체계에 의한다면, 읍·면·동에 최소한 1개소의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노인이 접근하기에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이 경로당이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자산)이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로당의 운영은 등록된 이용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시·군·구 지회장의 인준을 받은 회장 1인, 부회장 2~3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외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경로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후원회도 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시설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경로당 시설수 및 이용노인 현황

	시설수(개)	회원수(천명)	시설당 회원수(명)	회원수/전체노인수(%)
1975	3,872	320	82.7	26.3
1983	8,946	606	67.7	37.5
1993	23,430	1,075	45.8	44.1
1996	30,401	1,326	43.6	47.8
1998	35,143	1,663	47.3	54.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2) 시설규모 및 비품의 열악

경로당의 등록기준에서 보면, 시설 규모측면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1991. 1. 5.)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약 4.5평)를 기준으로 100세대 초과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기준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경로당의 시설규모는 대부분이 10~30평 미만으로 규정상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취미오락시설, 강당, 식당겸 휴게실 등을 갖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로당의 건물형태는 콘크리트, 시멘트나 벽돌구조가 대부분이나, 아직도 가건물형태의 무허가시설도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건축시기가 오래된 시설도 있어 협소하고 노후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시설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경로당이나, 판잣집과 같은 가건물형태의 경로당에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존 경로당의 절반 가량만이 노인들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반면에, 나머지 절반 가량의 경로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건물 중에서 일부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여가시설에 알맞게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로 제공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경로당내 주로 비치되어 있는 설비·비품은 선풍기, 전화기, 냉장고 등의 기본적인 비품에 한정되어 있고, 취사시설은 약 2/3 정도의 시설에서 구비되어 있으나 간이식당은 극히 일부분의 경로당에 한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취사시설 및 간이식당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시설규모의 협소함이나 다른 용도의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가활동 도구로서는 주변에서 기증받은 TV가 있으며, 이 외에 장기·바둑판, 신문·잡지·도서, 장구·북과 같은 오락기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TV는 우리 나라의 경우 케이블 TV를 제외하고는 주간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3) 운영자금의 부족

경로당의 운영비는 회원회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방유지의 찬조금, 회장·임원부담, 기타 자체사업수익금으로 조달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회비, 정부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로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회원회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의 보조금 수준은 충분치 못하고, 회원회비도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방유지의 찬조금으로 운영비를 상당한 정도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회원회비의 경우 강제적인 징수는 하지 않으나 일반 저소득계층 노인

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을 징수하는 시설이 있어 이것이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정부는 난방연료비(1989. 1.)와 운영비(1990. 1.)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액 수준은 각각 1개소당 연간 25만원과 월 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되는 월간 운영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달된 운영비로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연료비, 공공요금,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비용(소풍, 단체 관광비, 월례회식비 등) 등 대부분의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여가프로그램이나 오락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관리운영비용도 정부의 보조금수준이 낮아 상당한 비용을 회원회비나 지역사회주민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는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가족, 독지가,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직원 등이 있지만, 정기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수준은 경로당 운영책임자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운영책임자의 지역사회내 유지 또는 관련단체들과의 접촉정도에 크게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접촉정도가 빈약하여 경로당 운영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프로그램부재에 따른 이용률 저하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노인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는 10~20명 내외인 수준인데, 특히 하절기에는 동절기에 비하여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데다가 냉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하여 공원 등, 기타 공공장소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시설구조적 요인 이외에 급식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일단 귀가하여야 하는 불편 등이 뒤따르는 요인도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의 경우에는 귀가하여도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결식하는 경우가 시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998년 대한노인회 중앙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결식노인이 있는 경로당이 전체의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당 결식노인수는 8~10명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22만 2천명 정도의 노인이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유형을 보면, 바둑·장기두기나 라디오·TV시청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취미활동, 용돈벌이 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경

로당의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시설규모의 협소화 등의 이유로 전체의 25% 정도이다.

3) 경로당 운영활성화의 저해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조직·운영체계 측면, 시설구조적 측면, 재원조달 측면, 프로그램운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결국에는 노인들의 이용을 저하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각종 전문적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게 되고, 이용노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이나 노인이용의 제

고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용노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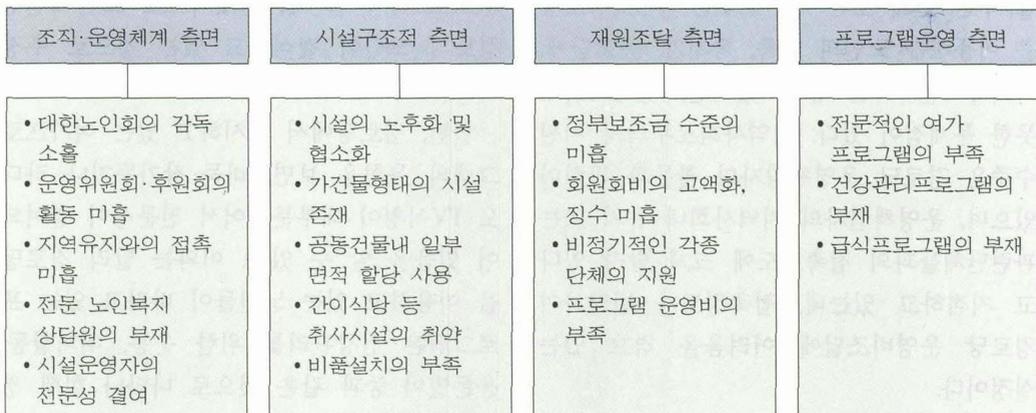
3.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첫째, 경로당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일차적인 노인복지 상담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서비스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규모 및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된 규모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한 이들 시설들

그림 1.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저해요인



을 보수, 개축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확대보다는 기본적인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소규모이거나, 저소득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운영 및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정된 국고·지방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방식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하고, 경로당의 상부조직인 대한노인회로부터도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1)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시범적 위탁운영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① 각종 상담에 응하고, ② 건강의 증진, ③ 교양, ④ 오락, ⑤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만큼 프로그램도 이에 부합하여 상담, 건강증진, 교양 및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조직 및 운영구조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비하여 훨씬 규모면이나 인력면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행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수도 1998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면 동일한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경로당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회관의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상담 및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 교양강좌이고, 추가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나 지역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3 참조).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은 추가적으로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의료재활사업, 노인편의시설 제공, 경로식당, 노인능력은행, 재가노인봉사사업, 지역복지사업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활용하는 경

표 2.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기준

내 용	시설 기준		
규 모	• 연면적 1,000㎡ 이상		
설비시설	• 사무실 및 숙직실 • 집회실 및 강당 • 물리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오락실 • 등화설비	• 상담실 및 면회실 • 화장실 • 소화설비
설비기준	• 오락실: 문화시설과 오락기구 •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 이용 • 화장실: 대변기 수의 1/3 이상은 좌식양변기 설치 •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방지 훈련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시설		
직 원	•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무원 • 취사부	• 상담지도원 2인 이상 • 물리치료사 • 관리인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령집』, 1998.

표 3. 노인복지회관의 사업내용

구 분	사업 내용
기 능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기본사업	① 상담·지도: 생활상담(생활, 주택, 신상 등), 건강상담(질병예방·치료) ②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③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 기능감퇴 방지 ④ 교양강좌: 교양향상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활동지도
추가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
기 타	지역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령집』, 1998.

우에는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프로그램의 연계

노인들은 대부분이 질병의 경중정도에 차

이는 있을지라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뇌졸중, 관절염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

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 및 건강검진·상담서비스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회관의 기본사업 중 건강상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과성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적으로 경로당 이용노인이 바라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용시설 중에 전국 읍·면·동 지역에까지 설치되어 있고,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경로당임을 감안하여,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연계하여 주 1회 정도의 순회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② 신체기능의 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일상생활수행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목욕서비스는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여 욕창 등과 같이 장애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집단주택보다는 욕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래식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목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년기 체력에 알맞은 순회스트레칭, 기공체조 등 체력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노년기에 퇴보하는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관절을 이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일반병원 내 노인병 클리닉 등 노인운동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순회강연·

강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오락·교양프로그램의 연계

현재 경로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락프로그램이 장기두기 등 정적인 놀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에 허약해질 폐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간단한 도구의 사용과 함께 손을 사용하여 두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림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며 습득하여야 할 상식과 다른 지역 문화도 습득할 수 있는 교양교실도 운영한다.

④ 치매노인보호 프로그램의 연계

우리 나라의 치매노인 발병률은 약 8.3%이고, 수치상으로는 약 25만 1천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치매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노인은 약 14만 8천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로당에서 경증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경증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경로당부터 실시하고, 또한 현재 재가노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⑤ 무료급식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계

경로당의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경로당내 점심식사시설이 부족하여 식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귀가하여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귀가하여도 식사가 불가능하여 결식하고 있는 노

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취사시설 및 도구를 구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결식노인의 급식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경로당부터 급식설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급식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경로당의 시설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로당 근처의 장소에서 점심식사 이후에는 철거할 수 있는 간이 취사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첨)